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 공주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97호 2026. 10. 8.(목)

## 공주 The 72nd Baekje Cultural Festival 백제문화제

2026. 10. 3. (토) ~ 10. 11. (일)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왕도심 일원

Great King Baekje!



<http://gongju.baekje.org>

청동기울

1500년 백제의 빛을 비추다

<제72회 백제문화제>



**【공 고】**

|                                                           |    |
|-----------------------------------------------------------|----|
| 제2026-2721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실시계획 공고(마암리_소교량0015 외 2건) ..... | 3  |
| 제2026-2724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6  |
| 제2026-272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28 |

**【고 시】**

|                                                             |    |
|-------------------------------------------------------------|----|
| 제2026-1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공주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40 |
| 제2026-197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 46 |
| 제2026-198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금강행복정원센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48 |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실시계획 공고 (마암리\_소교량0015 외 2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마암(668-1)\_소교량0015) 정비공사 외 2건』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공 주 시 장



###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 위치

- 가. 사업의 명칭: 소규모 위험시설(마암(668-1)\_소교량0015) 정비공사 외 2건  
나. 시행 위치: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68-1번지 외 2

### 2. 사업의 규모, 사업비 및 효과

| 사업명                              | 위치                  | 규모                | 사업비     | 효과                                                                         |
|----------------------------------|---------------------|-------------------|---------|----------------------------------------------------------------------------|
| 3건                               |                     |                   | 570,000 |                                                                            |
| 소규모 위험시설(마암(668-1)_소교량0015) 정비공사 | 반포면<br>마암리<br>668-1 | 소교량<br>재가설(L=25m) | 40,000  | 노후·불량 소교량의 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 |
| 소규모 위험시설(남산(607-1)_소교량0028) 정비공사 | 탄천면<br>남산리<br>607-1 | 벤치플룸관(800) L=54m  | 30,000  |                                                                            |
| 소규모 위험시설(산성(24-4)_소교량0018) 정비공사  | 정안면<br>산성리<br>24-4  | 교량 철거<br>및 재설치    | 500,000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나. 성 명: 공주시장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2026. 10.

나.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180일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소유자 및 소유자 외 권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류: 붙임1

6.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위치도

가. 열람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1층 건설과 지역개발팀

나.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09:00 ~ 18:00에 열람가능

7.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서

가. 사업비: 금570백만원

나. 자금조달 계획서

(단위: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 특별교부세 |
|-------|-----|-----|-----|-----|-------|
| 2026년 | 570 | -   | -   | 270 | 300   |

8.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041-840-761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가. 토지조서

| 일련<br>번호 | 토지소재지 |     | 지 번 | 지 목 | 지 적<br>(㎡)  | 편입면적<br>(㎡)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읍/면   | 동/리 |     |     |             |             | 주 소 | 성 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 및<br>내용 |    |
| 1        | 반포    | 마암  | 723 | 도로  | 24,635      | 22          | -   | 국<br>(국토교통부) |     |    |                |    |
| 2        | 탄천    | 남산  | 813 | 구거  | 38,034      | 67          | -   | 국<br>(국토교통부) |     |    |                |    |
| 3        | 정안    | 산성  | 236 | 하천  | 113,41<br>1 | 795         | -   | 국<br>(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나. 지장물조서

| 일련<br>번호 | 토지소재지 |     | 지 번 | 지 목 | 지장물명 | 단위 | 수량 | 소 유 자 |     | 비고 |
|----------|-------|-----|-----|-----|------|----|----|-------|-----|----|
|          | 읍/면   | 동/리 |     |     |      |    |    | 주 소   | 성 명 |    |
|          |       |     | 해   |     | 당    |    | 없  | 음     |     |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통합관리 추진)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닌 수익사업 확대 및 전문 운영을 위해 목적을 수정하고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합관리 위탁의 근거 마련
- (운영체계 개편) 숙박시설의 특성에 맞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감면사항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 개선

| 구분   | 당초             | 변경               |
|------|----------------|------------------|
| 위탁방향 | 민간위탁           | 통합관리위탁           |
| 중점관리 | 숙박시설 중심의 단순 실적 | 복합관광시설 중심의 성과 창출 |

## 2. 주요내용

### □ 목적 확대 (안 제1조)

-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보존 및 체험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 □ 정의 구체화 (안 제2조제1호,제4호내지제8호)

#### ○ (제1호 : 한옥마을 부대시설)

- 체험시설, 판매·음식·편의시설 및 그 밖에 시장이 한옥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한 일체의 시설

#### ○ (제4호 : 성수기)

- 가.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 나. 명절(설·추석) 연휴 기간 (전날 포함)
- 다. 공주시 군밤축제, 야밤맥주축제, 백제문화제 기간 (전날 포함)

#### ○ (제5호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

#### ○ (제6호 : 수탁자) 한옥마을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기관

#### ○ (제7호 : 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고 한옥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 (제8호 : 사용료) 한옥마을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

### □ 관리의 명확화 (안 제4조제1항,제3항및제4항)

#### ○ (제1항) 시설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한옥마을의 숙박시설, 부대시설 및 수익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제3항) 현재 규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관리위탁의 관련 규정 마련

- (제4항) “위탁시설”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

□ 사업의 다각화 (안 제5조제5호내지제8호)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 반영

- (제5호) 관리·운영 : 음식·판매시설 관리 및 운영
- (제6호) 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 공연, 교육 및 체험, 연회·행사·회의
- (제7호) 시설 홍보·마케팅 : 지역관광 연계, 온라인 예약·판매, 패키지 상품 개발
- (제8호) 민원처리 및 안전관리

□ 예약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항내지제4항)

- (제1항) 누리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예약 신청
- (제2항) 사용료 납부가 완료된 경우 예약 성립
- (제3항) 허위예약, 반복적인 예약취소, 명의도용, 동일인의 특정 기간 과도한 객실 예약 등 예약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예약 제한
- (제4항) 예약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마련

□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사용료 설정 (안 제7조제1항내지제6항)

- (제1항) 시설 사용료를 별표 1로 규정
- (제2항) 1일 사용 시간, 사용료 납부사항 규정
- (제3항) 1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제4항) 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용인원, 시설수준, 이용기간,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제5항) 수탁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운영 기간별 사용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전에 시장에게 제출

- (제6항)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한옥마을 누리집, 시설 내 게시판 등에 성수기·비수기 등 기간과 요금표를 게시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 사용료 감면의 차등 적용 (안 제8조)

- (별표 2)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감면 비율 차등 적용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수급권자, 병역 명문가, 공익목적 행사 등

□ 사용료 반환의 구체화 (안 제9조)

- (별표 3) 납부한 시설 사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취소 시점별 반환율 재조정

□ 사용제한 현실화 (안 제10조제1호,제4호,제5호)

- (제1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옥마을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제4호) 동물의 출입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편을 주거나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제5호) 시설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양도금지 (안 제11조) (조문이동)

□ 손해배상 현실화 및 수탁자 책임 반영 (안 제12조제1항내지제3항)

- (제1항) 시설물 또는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 (제2항) 손해배상 금액은 제품 또는 수선의 현재 시장가격에 따르며,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일 제품 또는 수선 전적의 3개 이상 평균가액으로 산정
- (제3항) 수탁자가 시설 관리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규정

□ 안전관리 강화 (안 제13조제1항,제2항)

- (제1항) 시장 및 수탁자는 한옥마을 시설 관리·운영 시 안전관리의 책임 의무 규정
  - 소방시설 점검, 야간 순찰, 비상연락체계, 사고 보고 등
- (제2항) 보험가입 의무자 대상을 “수탁자” 추가 반영

□ 별칭 사용 (안 제14조)

- 지역 명칭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객실 명칭을 별도 사용

□ 운영사항 신설 (안 제15조제1항내지제4항)

- (제1항) 시장은 한옥마을 운영에 관한 성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 성과평가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개
- (제2항) 수탁자는 평가 결과를 운영 개선에 반영
- (제3항) 수탁자는 운영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
- (제4항) 수탁자는 매월 한옥마을의 운영실적 및 결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 제출기한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위탁계약에서 결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9.(목) / 21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휴양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 휴양공원과(휴양정책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 환경성건강센터
- E-mail : dignitaryai@korea.kr
- 전화번호 : 041-840-8562 / FAX : 041-840-3769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휴양공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 입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휴양공원과 휴양정책팀 (☎ 041-840-8562)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 (32602)

ㄴ FAX : 041-840-3769 E-mail : dignitaryai@korea.kr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보존 및 체험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 체험시설, 판매·음식·편의시설 및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옥마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3. “주중”이란 제2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가.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 나. 명절(설·추석) 연휴 기간 (전날 포함)

다. 공주시 군밤축제, 야밤맥주축제, 백제문화제 기간 (전날 포함)

5.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6. “수탁자”란 한옥마을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기관을 말한다.

7.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한옥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사용료”는 한옥마을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한옥마을은 공주시 웅진동 337번지(관광단지길 12)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 ① 한옥마을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체험시설, 판매·음식·편의시설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범위 및 위탁시설, 위탁료, 운영조건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가 체결하는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업무)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전통혼례 프로그램 지원
3. 전통놀이체험 프로그램 지원
4. 기념품 판매 등 시설 홍보
5. 음식·판매시설 관리 및 운영
6. 전통문화 공연, 교육 및 체험, 연회·행사·회의
7. 지역관광 연계, 온라인 예약·판매, 패키지 상품 개발
8. 고객 민원 처리, 안전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약) ① 한옥마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누리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용료 납부가 완료된 경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③ 허위예약, 반복적인 예약취소, 명의도용, 동일인의 특정기간 과도한 객실 예약 등 예약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한옥마을 예약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한옥마을 내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한옥마을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사용자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한옥마을 내 시설을 1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규모, 수용인원, 이용기간, 주중·주말, 성수기·

비수기 등을 고려하여 한옥마을 시설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기간별 사용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 운영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한옥마을 누리집, 시설 내 게시판 등에 성수기·비수기 등 기간과 요금표를 게시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시설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사용제한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옥마을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4. 동물의 출입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편을 주거나 시설관리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5. 시설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 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한옥마을의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한옥마을의 시설물 또는 제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제품 또는 수선의 현재 시장가격에 따르며,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일 제품 또는 수선 견적의 3개 이상의 평균가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시장 및 수탁자는 한옥마을 시설을 관리·운영 시 소방 시설, 야간 순찰, 비상연락체계, 사건 보고 등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별칭사용) 지역 명칭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객실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사항) ① 시장은 한옥마을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

다.

③ 수탁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한옥마을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한옥마을의 운영실적 및 결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위탁계약에서 정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시설 사용료 (제7조제1항 관련)

### 1. 단체 숙박동 사용료

(단위 : 천원)

| 구 분 | 사 용 료 (정원 4명, 최대 8명) |     |     |     |
|-----|----------------------|-----|-----|-----|
|     | 비수기                  |     | 성수기 |     |
|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 숙박비 | 130                  | 150 | 150 | 180 |

### 2. 개별 숙박동 사용료

(단위 : 천원)

| 구 분               | 수용인원 |    | 사용료 |     |     |     | 방수 | 비 고            |
|-------------------|------|----|-----|-----|-----|-----|----|----------------|
|                   | 정원   | 최대 | 비수기 |     | 성수기 |     |    |                |
|                   |      |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                |
| 이인관<br>탄천관<br>의당관 | 2명   | 3명 | 160 | 180 | 180 | 210 | 1  | 구들<br>(23.4㎡)  |
| 농본관<br>신토관<br>불이관 | 2명   | 3명 | 180 | 210 | 210 | 240 | 1  | 구들<br>(30.53㎡) |
| 계룡관1              | 2명   | 3명 | 110 | 130 | 130 | 150 | 1  | 구들<br>(19.32㎡) |
| 계룡관2              | 2명   | 2명 | 130 | 150 | 150 | 170 | 1  | 구들<br>(12.97㎡) |

| 구 분 | 수용인원 |    | 사용료 |     |     |     | 방수 | 비 고              |
|-----|------|----|-----|-----|-----|-----|----|------------------|
|     | 정원   | 최대 | 비수기 |     | 성수기 |     |    |                  |
|     |      |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                  |
| 사곡관 | 2명   | 3명 | 70  | 90  | 90  | 110 | 1  | 전기난방<br>(14.98㎡) |
| 우성관 | 8명   | 9명 | 230 | 260 | 260 | 320 | 3  | 전기난방<br>(50.49㎡) |
| 유구관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구들<br>(29.88㎡)   |
| 반포관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
| 정안관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
| 신평관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
| 행랑채 | 2명   | 2명 | 50  | 70  | 70  | 90  | 1  | 구들<br>(10.8㎡)    |
| 별 채 | 4명   | 5명 | 190 | 210 | 210 | 250 | 2  | 구들<br>(32.4㎡)    |
| 사랑채 | 4명   | 5명 | 200 | 220 | 220 | 250 | 2  | 구들<br>(42.59㎡)   |
| 안 채 | 8명   | 9명 | 230 | 260 | 260 | 320 | 3  | 구들<br>(57.84㎡)   |

### 3. 단체·개별 숙박동 추가 이용료

| 구 분      | 요 금         | 비 고                                           |
|----------|-------------|-----------------------------------------------|
| 인원 추가    | 10,000원(1인) | 단체숙박동 (최대 4인),<br>개별숙박동 (최대 1인)<br>※ 당일 취소 불가 |
| 침구 추가    | 5,000원(1채)  | ※ 당일 취소 불가                                    |
| 난방 요금    | 10,000원(1박) | 하절기(7~8월)                                     |
| 퇴실 시간 연장 | 10,000원     | 11:00 ~ 12:00                                 |
|          | 객실 1박 사용료   | 12:00 ~                                       |

#### 4. 부대시설 사용료

##### 가. 운영요금

| 구 분           | 규모              | 기본요금             | 추가요금                | 비고                                     |
|---------------|-----------------|------------------|---------------------|----------------------------------------|
| 다목적실<br>(백제방) | 40명             | 나. 비고 참고         |                     | 09:00 ~<br>18:00                       |
| 오토캠핑장         | 4개소             | 30,000원<br>(1일)  | 10,000원<br>(1시간 연장) | 00:00 ~<br>24:00                       |
| 야외<br>바비큐장    | 16개 탁자<br>(64명) | 30,000원<br>(2시간) | 15,000원<br>(1시간 연장) | 1부<br>17:00~19:00<br>2부<br>19:30~21:30 |

##### 나. 비고

- 1) 숙박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4시간 기준 100,000원이며,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 2)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기준 10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0원을 추가 납부
- 3) 한옥마을 내 입주업체(자)가 사용하는 경우 : 2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제8조 관련)

| 구<br>분                                                                                      | 최대감면율(%)   |            |
|---------------------------------------------------------------------------------------------|------------|------------|
|                                                                                             | 단 체<br>숙박동 | 개 별<br>숙박동 |
|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 30         | 30         |
| 2. 충청남도 또는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교육<br>또는 행사 ※ 산하기관 포함                                                | 20         | 20         |
| 3. 교육 관련 단체가 학생 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br>목적으로 사용 ※ 기준정원 15명 이상                                     | 20         | 해당없음       |
|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br>※ 유족증 필수 제시                                                    | 20         | 20         |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0         | 20         |
| 6. 「병역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br>※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른<br>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본인 및 직계에 한함) | 20         | 20         |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20         | 20         |
| 8.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br>다자녀(2자녀)를 양육(18세 이하)하는 자<br>※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수 지참  | 30         | 30         |
| 9.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br>있는 자                                                          | 20         | 20         |
| 10.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br>공주시 명예시민                                                       | 20         | 20         |
| 11. 국민(수행자 포함), 외국사절(수행자 포함)                                                                | 30         | 30         |

|                                                                                              |     |     |
|----------------------------------------------------------------------------------------------|-----|-----|
| 12.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협약서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자<br>(부여군, 청양군, 대전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 향후 협약 체결할 경우 자동 적용 | 20  | 20  |
| 13. 공주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한 자<br>※ 입실 시 증명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한함.<br>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감면              | 20  | 20  |
| 14. 관내 대학생 ※ 학생증 제시                                                                          | 20  | 20  |
| 15. 시장과 사전 협의한 관광객 유치 및 공익적 홍보를 위한 수탁자의 행위 ※ 실적 필수 제출                                        | 100 | 100 |

※ 비고 1. (미적용) 제3호와 관련하여 성수기의 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2. (적용시설) 사용료 감면은 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함.

3. (중복할인제외) 각 호에 따른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2.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 구 분           | 감면사유                                         | 최대 감면율(%) |
|---------------|----------------------------------------------|-----------|
| 다목적실<br>(백제방) | 1. 국가, 충청남도, 공주시가<br>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br>행사의 경우 | 100       |
| 오토캠핑장         |                                              |           |
| 야외<br>바비큐장    | 2. 그 밖에 시장이 한옥마을 운영에<br>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9조 관련)**

| 구 분                    | 반환 및 배상 기준                                 |
|------------------------|--------------------------------------------|
| 1. 관리·운영의 귀책사유의 (예약)취소 | * (귀책사유) 시설 고장으로 인한 보수, 전염병 환자 입실로 소독 진행 등 |
| 가. 성수기 주말              |                                            |
| ○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     | ○ 사용료 전액 반환                                |
| ○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
| ○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
| ○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40% 배상                  |
| ○ 사용 예정일 1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60% 배상                  |
| ○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80% 배상                  |
| 나. 성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                                            |
| ○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     | ○ 사용료 전액 반환                                |
| ○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
| ○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
| ○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     |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                  |

| 구 분                                                                                                                                                                                                                      | 반환 및 배상 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예정일 1일전</li> <li>○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40% 배상</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50% 배상</li> </ul>                                                                                                                               |
| <p>다. 비수기 주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li> <li>○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li> <li>○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li> <li>○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li> <li>○ 사용 예정일 1일전</li> <li>○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5% 배상</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5% 배상</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li> </ul> |
| <p>2.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예약)취소</p> <p>가. 성수기 주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li> <li>○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li> <li>○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li> </ul>                                                | <p>* (귀책사유) 날짜변경, 노쇼(No-show), 사용 과정에서의 시설 파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li>○ 사용료 20% 공제 후 80% 반환</li> <li>○ 사용료 40% 공제 후 60% 반환</li> </ul>                                                              |

| 구 분                                                                                                                                                                                                                              | 반환 및 배상 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li> <li>○ 사용 예정일 1일전</li> <li>○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60% 공제 후 40% 반환</li> <li>○ 사용료 80% 공제 후 20% 반환</li> <li>○ 사용료 90% 공제 후 10% 반환</li> </ul>                                                                                    |
| <p>나. 성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예정일 8일전, 계약당일</li> <li>○ 사용 예정일 7일전 ~ 6일전</li> <li>○ 사용 예정일 5일전 ~ 4일전</li> <li>○ 사용 예정일 3일전 ~ 2일전</li> <li>○ 사용 예정일 1일전</li> <li>○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li>○ 사용료 10% 공제 후 90% 반환</li> <li>○ 사용료 30% 공제 후 70% 반환</li> <li>○ 사용료 50% 공제 후 50% 반환</li> <li>○ 사용료 60% 공제 후 85% 반환</li> <li>○ 사용료 70% 공제 후 30% 반환</li> </ul> |
| <p>다. 비수기 주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예정일 7일전</li> <li>○ 사용 예정일 5일전</li> <li>○ 사용 예정일 3일전</li> <li>○ 사용 예정일 1일전</li> <li>○ 사용 당일, 취소 미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li>○ 사용료 10% 공제 후 90% 반환</li> <li>○ 사용료 20% 공제 후 80% 반환</li> <li>○ 사용료 30% 공제 후 70% 반환</li> <li>○ 사용료 40% 공제 후 60% 반환</li> </ul>                                |

| 구 분                                                                                                                     | 반환 및 배상 기준         |
|-------------------------------------------------------------------------------------------------------------------------|--------------------|
| <p>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예약)취소</p> <p>* 기상청이 우리 지역에 강풍·호우·대설·태풍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p> | <p>○ 사용료 전액 반환</p> |

- \* (비고) 1. 사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실하는 경우 반환 불가
2. 객실 (예약) 사용을 부분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준하여 반환 적용

공주시 공고 제2026-272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부서별 업무 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국·실·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팀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하고, 해당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 나. 2026년 기준인력 수시배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햇빛소득마을, 지방세입 체납관리 및 민원해결·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신규·확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1) 조직 총괄

| < 현    행    > |                       | < 개    편    >                                                                       |                                    |
|---------------|-----------------------|-------------------------------------------------------------------------------------|------------------------------------|
| 기구            | • 본청 : 4국 4실 27과 141팀 |  | • 본청 : 4국 4실 27과 <b>142팀 (+1팀)</b> |
|               | • 직속기관 : 2기관 8과 33팀   |                                                                                     | • 변동없음                             |
| 정원            | • 총 1,165명            |                                                                                     | • 총 <b>1,169명 (+4명)</b>            |

\* 의회사무국(1국 3팀), 직속기관(2기관 8과 33팀), 읍·면·동(16개 52팀) 변동 없음

## 나. 공무원 정원

### 1) 정원 변동사항

◆ 총 정원 : 1,169명 ('26년 수시배정 기준인력 4명 증원)

| 현 재                                   | 개 편 안                                 |
|---------------------------------------|---------------------------------------|
| 집행기관의 정원 : 1,139명<br>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143명<br>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

\* (2026년 수시배정 기준인력)

| 구분    | 계 | 사회연대경제 | 햇빛소득마을 | 체납관리단 | 민원해결·갈등관리 |
|-------|---|--------|--------|-------|-----------|
| 국가 정책 | 4 | 1      | 1      | 1     | 1         |

### 2) 정원 책정 기준

○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별표5) : 변경 없음

| 구 분 | 일 반 직  | 별 정.정 무 직 |
|-----|--------|-----------|
| 비 율 | 99% 이상 | 1% 이내     |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별표6)

- 일반직 공무원 : 변경 없음

|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 문<br>경 력 관 |
|-----|-------|------|-------|-------|-------|------|--------------|
| 비 율 | 1% 이내 | 6%이내 | 28%이내 | 32%이내 | 25%이내 | 7%이상 | 1% 이내        |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변경 없음

| 구 분 | 연 구 직 |        | 지 도 직  |        |
|-----|-------|--------|--------|--------|
|     | 연 구 관 | 연 구 사  | 지 도 관  | 지 도 사  |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10% 이내 | 90% 이상 |

- 별정직 공무원 : 변경 없음

| 기 준 | 구 분 | 5급 상당 이상 | 6급 ~ 8급 상당 |
|-----|-----|----------|------------|
| 현 재 | 비 율 | 50% 이내   | 50% 이상     |

###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 현 재

| 직급별     | 기관별 | 총계    | 본청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
| 총계      |     | 1,165 |    |       | -    |     |     |
| 정무직(시장) |     | 1     | 1  |       |      |     |     |
| 일반직 계   |     | 1,117 |    |       | -    |     |     |
| 3급      |     | 1     | 1  |       |      |     |     |
| 4급      |     | 7(1)  | 4  | 1     | 2(1) |     |     |
| 5급      |     | 54    | 31 | 2     | 5    | -   | 16  |
| 6급 이하   |     | 1,055 |    |       | -    |     |     |
| 별정직 계   |     | 2     |    |       | -    |     |     |
| 5급 상당   |     | 1     | 1  |       |      |     |     |
| 6급상당 이하 |     | 1     |    |       | -    |     |     |
| 연구직 계   |     | 10    |    |       | -    |     |     |
| 연구관     |     | -     |    |       |      |     |     |
| 연구사     |     | 10    | 9  |       | 1    |     |     |
| 지도직 계   |     | 33    |    |       | -    |     |     |
| 지도관     |     | 3     |    |       | 3    |     |     |
| 지도사     |     | 30    |    |       | 30   |     |     |
| 전문경력관 계 |     | 2     |    |       | -    |     |     |
| 나군      |     | 2     | -  |       |      |     |     |

#### 개편안

| 직급별     | 기관별 | 총계    | 본청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
| 총계      |     | 1,169 |    |       | -    |     |     |
| 정무직(시장) |     | 1     | 1  |       |      |     |     |
| 일반직 계   |     | 1,121 |    |       | -    |     |     |
| 3급      |     | 1     | 1  |       |      |     |     |
| 4급      |     | 7(1)  | 4  | 1     | 2(1) |     |     |
| 5급      |     | 54    | 31 | 2     | 5    | -   | 16  |
| 6급 이하   |     | 1,059 |    |       | -    |     |     |
| 별정직 계   |     | 2     |    |       | -    |     |     |
| 5급 상당   |     | 1     | 1  |       |      |     |     |
| 6급상당 이하 |     | 1     |    |       | -    |     |     |
| 연구직 계   |     | 10    |    |       | -    |     |     |
| 연구관     |     | -     |    |       |      |     |     |
| 연구사     |     | 10    | 9  |       | 1    |     |     |
| 지도직 계   |     | 33    |    |       | -    |     |     |
| 지도관     |     | 3     |    |       | 3    |     |     |
| 지도사     |     | 30    |    |       | 30   |     |     |
| 전문경력관 계 |     | 2     |    |       | -    |     |     |
| 나군      |     | 2     |    |       | -    |     |     |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임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자우편 : ererasas@korea.kr

전 화 : 041-840-2243 / FAX : 041-840-3707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 입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041-840-2243)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3707, 전자우편 : ererasas@korea.kr

[붙임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조례 제 호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65명이며”를 “1,16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39명”을 “1,143명”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별표 3]

### **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장사무**(제14조제2항 관련)

| 구            | 분  | 분                                                                                         | 장 | 사 | 무 |
|--------------|----|-------------------------------------------------------------------------------------------|---|---|---|
| 농업기술<br>센터소장 | 1  | 농어촌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촌진흥자금, 농촌복지, 농지보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   |
|              | 2  | 고품질 쌀생산 대책, 정부양곡,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 농업재해, 농기계공급 등에 관한 사항                               |   |   |   |
|              | 3  | 농산물 유통, 농산물 수출,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공공)급식 운영,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   |   |
|              | 4  | 축산사업, 내수면 어업, 조사료 생산, 가축분뇨, 알밤한우 육성, 곤충사업, 축산지도사업 등에 관한 사항                                |   |   |   |
|              | 5  | 가축방역, 동물보호 및 등록, 축산물 유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   |
|              | 6  | 농촌진흥사업 종합기획·조정·평가, 농촌진흥기반조성, 농촌 진흥조직 역량강화, 농업인교육훈련, 학습단체 조직육성, 강소농 육성, 그 밖의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   |   |   |
|              | 7  | 농업회관·농촌테마공원 운영, 도시농업육성, 농촌체험 농가, 농업문화 확산 등에 관한 사항                                         |   |   |   |
|              | 8  | 귀농귀촌인 종합지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및 농업현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
|              | 9  | 농작물 안정생산 및 신기술 보급, 농업생산환경 진단 및 개선, 우량종자 보급,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정비·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   |   |
|              | 10 | 농촌자원 활용 상품화,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 시범 및 창업 교육,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11 |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지도 및 신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   |   |   |
|              | 12 | 농업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4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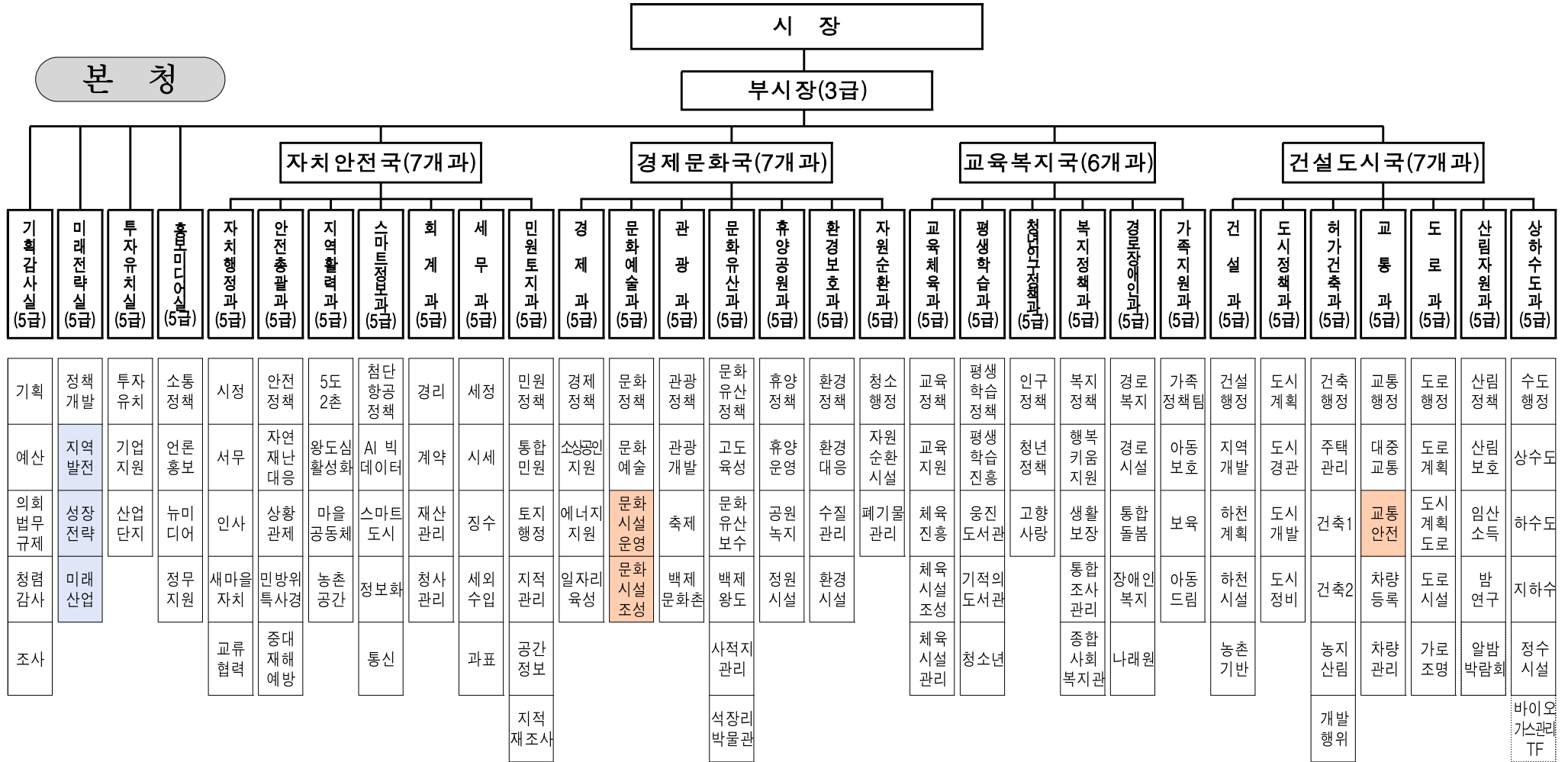
| 기관별<br>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br>사 무 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
| 총 계        | 1,169 | -   |              |      |     |     |
| 정무직 계      | 1     | 1   |              |      |     |     |
| 시장         | 1     | 1   |              |      |     |     |
| 일반직 계      | 1,121 | -   |              |      |     |     |
| 3급         | 1     | 1   |              |      |     |     |
| 4급         | 7(1)  | 4   | 1            | 2(1) |     |     |
| 5급         | 54    | 31  | 2            | 5    | -   | 16  |
| 6급 이하 계    | 1,059 | -   |              |      |     |     |
| 별정직 계      | 2     | -   |              |      |     |     |
| 5급 상당      | 1     | 1   |              |      |     |     |
| 6급 상당 이하   | 1     | -   |              |      |     |     |
| 연구직 계      | 10    | -   |              |      |     |     |
| 연 구 관      | -     |     |              |      |     |     |
| 연 구 사      | 10    | 9   |              | 1    |     |     |
| 지도직 계      | 33    | -   |              |      |     |     |
| 지 도 관      | 3     |     |              | 3    |     |     |
| 지 도 사      | 30    |     |              | 30   |     |     |
| 전문경력관 계    | 2     | -   |              |      |     |     |
| 나군         | 2     | -   |              |      |     |     |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임

# 공주시 행정기구표(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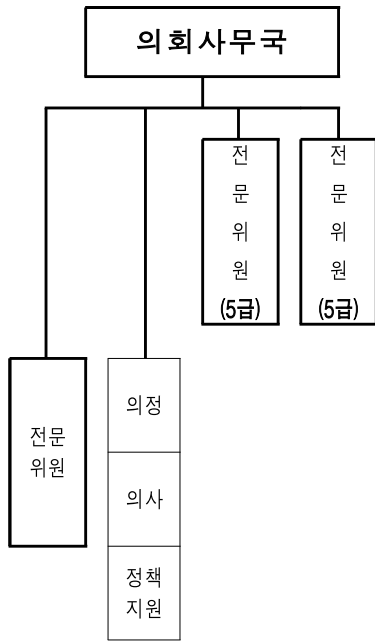
| 구 분  | 본 청 |                  | 소속기관          |     | 하부행정기관   |           |           | 의 회 사무국  |
|------|-----|------------------|---------------|-----|----------|-----------|-----------|----------|
|      | 국   | 실·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동         |          |
| 조직정비 | 4   | 4·27<br>(16·125) | 2소 8과<br>(33) | -   | 1<br>(4) | 9<br>(36) | 6<br>(12) | 1<br>(3) |

※ ( )는 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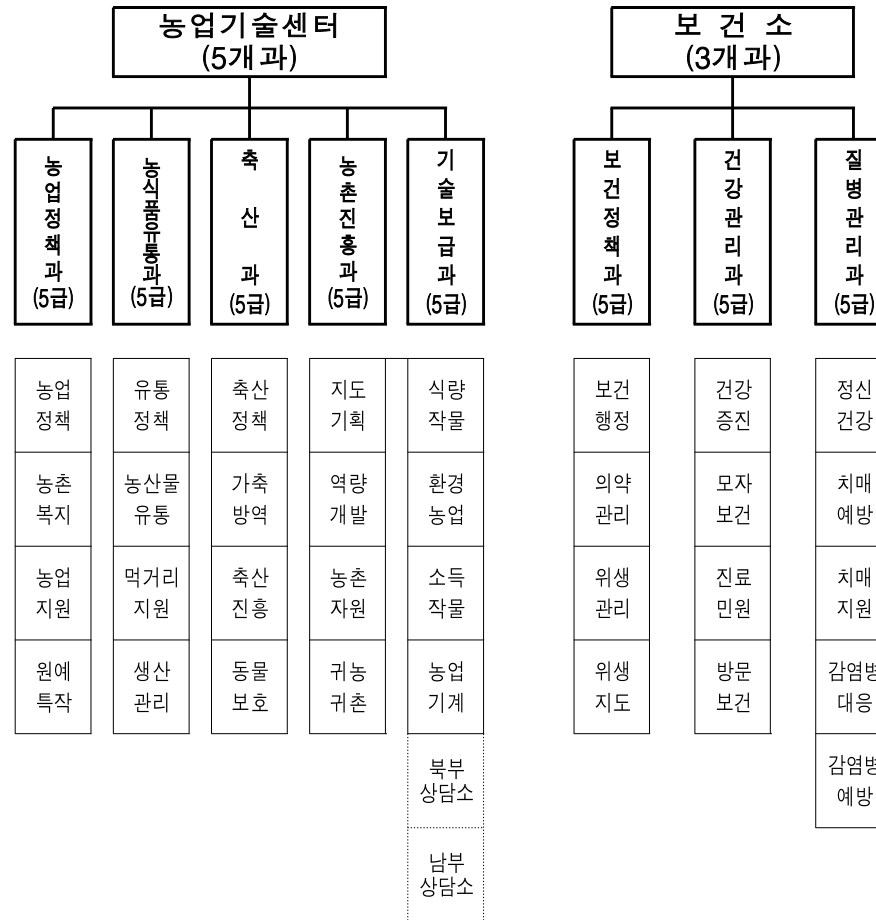


신규    명칭변경    이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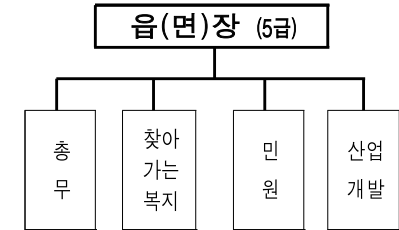
## 의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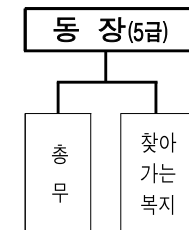
## 직 속 기 관



## 읍·면



## 동



# 개편안) 공 주 시 행 정 기 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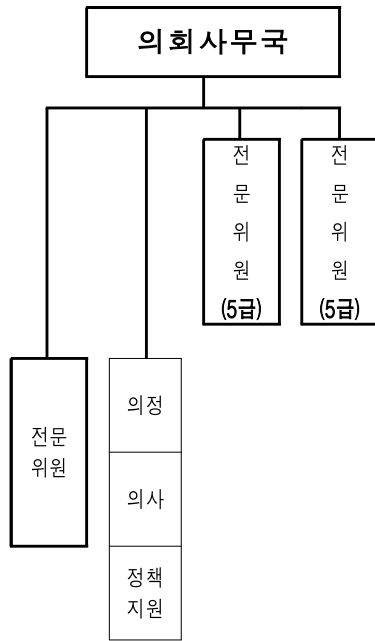
| 구 분 | 본 청 |                  | 소속기관          |     | 하부행정기관   |           |           | 의 회 사무국  |
|-----|-----|------------------|---------------|-----|----------|-----------|-----------|----------|
|     | 국   | 실·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동         |          |
| 개편안 | 4   | 4·27<br>(16·126) | 2소 8과<br>(33) |     | 1<br>(4) | 9<br>(36) | 6<br>(12) | 1<br>(3) |

※ ( )는 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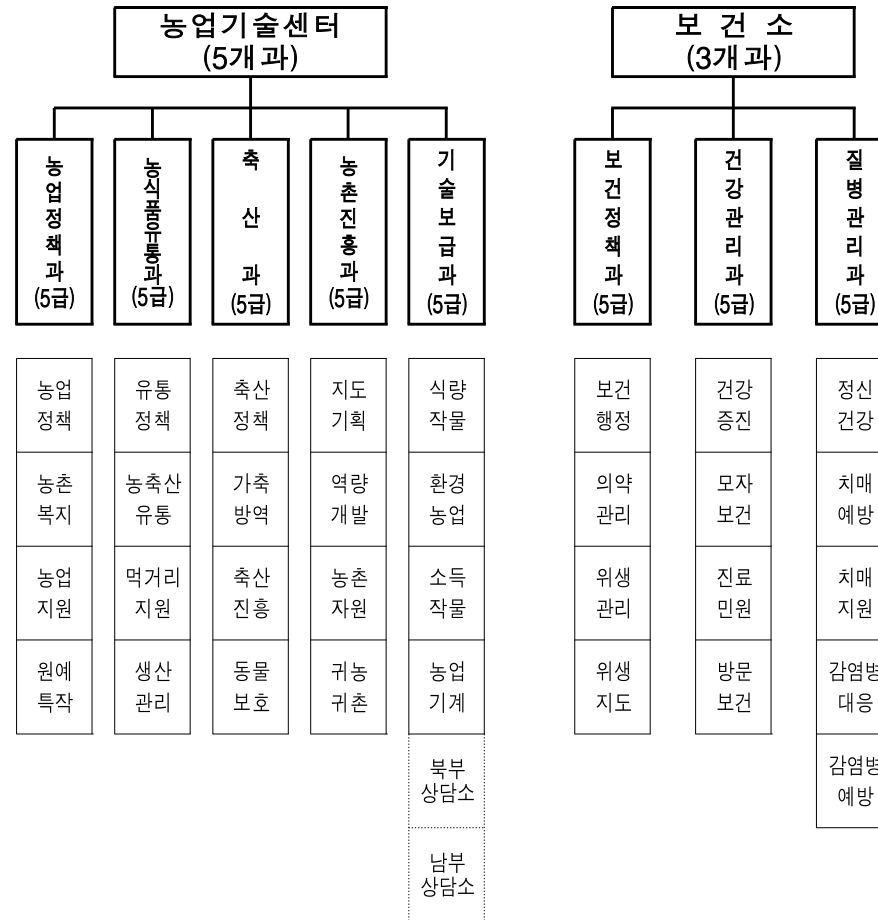
|               |               |               |                | 자치안전국(7개 과)   |               |               |                |             |             |               | 경제문화국(7개 과) |               |             |               |               |               |               | 교육복지국(6개 과)   |               |                 |               |              |               | 건설도시국(7개 과) |               |               |             |             |               |               |
|---------------|---------------|---------------|----------------|---------------|---------------|---------------|----------------|-------------|-------------|---------------|-------------|---------------|-------------|---------------|---------------|---------------|---------------|---------------|---------------|-----------------|---------------|--------------|---------------|-------------|---------------|---------------|-------------|-------------|---------------|---------------|
| 기획감사실<br>(5급) | 미래전략실<br>(5급) | 투자유치실<br>(5급) | 홍보미디어실<br>(5급) | 자치행정과<br>(5급) | 안전총괄과<br>(5급) | 지역활력과<br>(5급) | 스마트정보과<br>(5급) | 회계과<br>(5급) | 세무과<br>(5급) | 민원토지과<br>(5급) | 경제과<br>(5급) | 문화예술과<br>(5급) | 관광과<br>(5급) | 문화유산과<br>(5급) | 휴양공원과<br>(5급) | 환경보호과<br>(5급) | 자원순환과<br>(5급) | 교육체육과<br>(5급) | 평생학습과<br>(5급) | 청년노동정책과<br>(5급) | 복지정책과<br>(5급) | 경로복지<br>(5급) | 가족지원과<br>(5급) | 건설과<br>(5급) | 도시정책과<br>(5급) | 허가건축과<br>(5급) | 교통과<br>(5급) | 도로과<br>(5급) | 산림자원과<br>(5급) | 상하수도과<br>(5급) |
| 기획            | 정책개발          | 투자유치          | 소통정책           | 시정            | 안전정책          | 5도2촌          | 첨단항공정책         | 경리          | 세정          | 민원정책          | 경제정책        | 문화정책          | 관광정책        | 문화유산정책        | 휴양정책          | 환경정책          | 청소행정          | 교육정책          | 평생학습정책        | 인구정책            | 복지정책          | 경로복지         | 가족정책팀         | 건설행정        | 도시계획          | 건축행정          | 교통행정        | 도로행정        | 산림정책          | 수도행정          |
| 예산            | 성장전략          | 기업지원          | 언론홍보           | 서무            | 자연재난대응        | 왕도심활성화        | AI빅데이터         | 계약          | 시세          | 통합민원          | 소상공인지원      | 문화예술          | 관광개발        | 고도육성          | 휴양운영          | 환경대응          | 자원순환시설        | 교육지원          | 평생학습진흥        | 청년정책            | 행복키움지원        | 경로시설         | 아동보호          | 지역개발        | 도시경관          | 주택관리          | 대중교통        | 도로계획        | 산림보호          | 상수도           |
| 의회법무규제        | 성과평가          | 산업단지          | 뉴미디어           | 인사            | 상황관제          | 마을공동체         | 스마트도시          | 재산관리        | 징수          | 토지행정          | 에너지지원       | 문화시설          | 축제          | 문화유산보수        | 공원녹지          | 수질관리          | 폐기물관리         | 체육진흥          | 응진도서관         | 고향사랑            | 생활보장          | 통합돌봄         | 보육            | 하천계획        | 도시개발          | 건축1           | 교통안전        | 도시계획도로      | 임산소득          | 하수도           |
| 청렴감사          | 공공기관유치지원      |               | 정무지원           | 새마을자치         | 민방위특사경        | 농촌공간          | 정보화            | 청사관리        | 세외수입        | 지적관리          | 일자리육성       | 문화시설운영        | 백제문화촌       | 백제왕도          | 정원시설          | 환경시설          |               | 체육시설조성        | 기적의도서관        |                 | 통합조사관리        | 장애인복지        | 아동드림          | 하천시설        | 도시정비          | 건축2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밤연구           | 지하수           |
| 조사            |               |               |                | 교류협력          | 중대재해예방        |               | 통신             |             | 과표          | 공간정보          | 지적재조사       | 문화사업          |             | 사적지관리         |               |               |               | 체육시설관리        | 청소년           |                 | 종합사회복지관       | 나래원          |               | 농촌기반        |               | 농지산림          | 교통지도        | 가로조명        | 알밤박람회         | 정수시설          |
|               |               |               |                |               |               |               |                |             |             |               |             |               |             | 석장리박물관        |               |               |               |               |               |                 |               |              |               |             | 개발행위          | 차량등록          | 차량관리        |             |               | 바이오가스관리 TF    |

신규    명칭변경    이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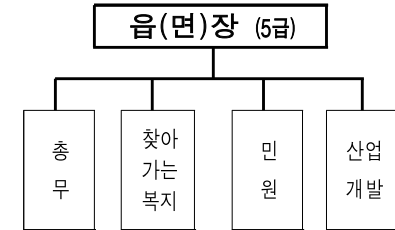
## 의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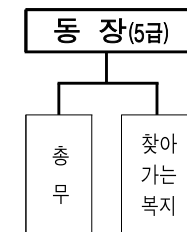
## 직 속 기 관



## 읍·면



## 동



## 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공주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공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10. 8.

공 주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주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공주대학교)
- 명 칭 :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학생복지관, 헌혈의 집 개축 및 증축공사 실시계획, 태양광(공작물)설치 및 가설건축물 축조(창고2개소)

### 3. 사업 내용

- 건축개요

| 구분   |     | 내용                                                                              |         |                                           |                                      |
|------|-----|---------------------------------------------------------------------------------|---------|-------------------------------------------|--------------------------------------|
| 사업명  |     | 공주대학교 유리온실, 도자문화실습관 개축 및 학생복지관 증축, 헌혈의 집 대수선 및 증축, 태양광(공작물)설치 및 가설건축물 축조(창고2개소) |         |                                           |                                      |
| 대지위치 |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         |                                           |                                      |
| 구분   |     | 캠퍼스전체                                                                           | 유리온실    | (도자문화실습관, 학생복지관, 헌혈의 집)                   | 태양광(공작물), 가설건축물 (창고2개)               |
| 지역지구 |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                                           |                                      |
| 건물용도 |     | 교육연구시설                                                                          |         |                                           |                                      |
| 대지면적 |     | 359,542㎡(캠퍼스전체)                                                                 | 2,155㎡  | -                                         | 태양광:200.42㎡<br>가설건축물:82㎡             |
| 건축면적 |     | 64.102.15㎡                                                                      | 171.72㎡ | 도자:198.00㎡,<br>복지:1,703.14㎡<br>헌혈:139.76㎡ | 태양광<br>무게 :106.43ton,<br>부피 : 12.59㎡ |
| 연면적  | 전체  | 264,662.97㎡                                                                     | 171.72㎡ | 도자:198.00㎡,<br>복지:6,500.00㎡<br>헌혈:270.85㎡ |                                      |
|      | 용적률 | 241,343.19㎡                                                                     |         |                                           |                                      |
| 건폐율  |     | 17.83% (법정20%이하)                                                                | -       | -                                         | 가설건축물<br>컨테이너1:28㎡,<br>컨테이너2:54㎡     |
| 용적률  |     | 66.46% (법정80%이하)                                                                | -       | -                                         |                                      |
| 건축규모 |     | -                                                                               | 지상1층    | 도자:지상1층<br>복지:지하1층, 지상4층<br>헌혈:지상2층       |                                      |

## ○ 건축세부내역

### 1) 유리온실(건물번호 73) : 신축

#### ◦ 유리온실 신축

| 번호   | 명칭 |      | 층수 |    | 면적(m <sup>2</sup> ) |        | 용도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73 | -  | 유리온실 | -  | 1F | -                   | 171.72 | -  | 유리온실 | 신축 |
|      |    |      | 소계 | 소계 | -                   | 171.72 |    |      |    |

### 2) 도자문화실습관(건물번호 74) : 개축

#### ◦ 주얼리디자인 실습관 축소

| 번호    | 명칭          |             | 층수 |    | 면적(m <sup>2</sup> ) |        | 용도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56 56 | 주얼리 디자인 실기관 | 주얼리 디자인 실기관 | 1F | 1F | 513.30              | 315.30 | 강의실습실 | -  | 면적축소 |
|       |             |             | 소계 | 소계 | 513.30              | 315.30 |       |    |      |

#### ◦ 도자문화 실습관 신설

| 번호   | 명칭 |          | 층수 |    | 면적(m <sup>2</sup> ) |        | 용도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74 | -  | 도자문화 실습관 | -  | 1F | -                   | 198.00 | -  | 도자문화실습관 | 신설 |
|      |    |          | 소계 | 소계 | -                   | 198.00 |    |         |    |

### 3) 학생복지관(건물번호 17) : 증축

| 번호    | 명칭      |        | 층수   |      | 면적(m <sup>2</sup> ) |          | 용도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17 17 | 글로벌 인재관 | 학생 복지관 | 지하1F | 지하1F | 288.00              | 309.28   | 기계실  | 기계실      | 글로벌 인재관 철거 및 학생복지관 증축 |
|       |         |        | 1F   | 1F   | 702.00              | 1,648.78 | 행정실  | 식당       |                       |
|       |         |        | 2F   | 2F   | 540.00              | 1,665.62 | 고시원  | 스터디카페    |                       |
|       |         |        | 3F   | 3F   | 240.48              | 1,665.62 | 학생회실 | 전시실, 공연홀 |                       |
|       |         |        | -    | 4F   | -                   | 1,210.70 | -    | 동아리실     |                       |
|       |         |        | 소계   | 소계   | 1,770.48            | 6,500.00 |      |          |                       |
| 18 18 | 학생 복지관  | -      | 1F   | 1F   | 996.20              | -        | 식당   | -        | 학생 복지관 철거             |
|       |         |        | 2F   | 2F   | 666.00              | -        | 동아리실 | -        |                       |
|       |         |        | 3F   | 3F   | 666.00              | -        | "    | -        |                       |
|       |         |        | 소계   | 소계   | 2,328.20            | -        |      |          |                       |

4) 헌혈의 집(건물번호 22) : 대수선 및 증축

| 번호 |    | 명칭   |      | 층수 |    | 면적(m <sup>2</sup> ) |        | 용도  |     | 비고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22 | 22 | 헌혈의집 | 헌혈의집 | 1F | 1F | 116.91              | 139.76 | 체혈실 | 체혈실 | 1층 증축<br>(옥외계단) |
|    |    |      |      | 2F | 2F | 131.09              | 131.09 | 행정실 | 행정실 |                 |
|    |    |      |      | 소계 | 소계 | 248.00              | 270.85 |     |     |                 |

5) 태양광 - 부지면적 200.42m<sup>2</sup>(무게 : 106.43ton, 부피 : 12.59m<sup>3</sup>)

6) 가설건축물 - 부지면적 : 82m<sup>2</sup>(컨테이너1 : 28m<sup>2</sup>, 컨테이너2 : 54m<sup>2</sup>)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립공주대학교총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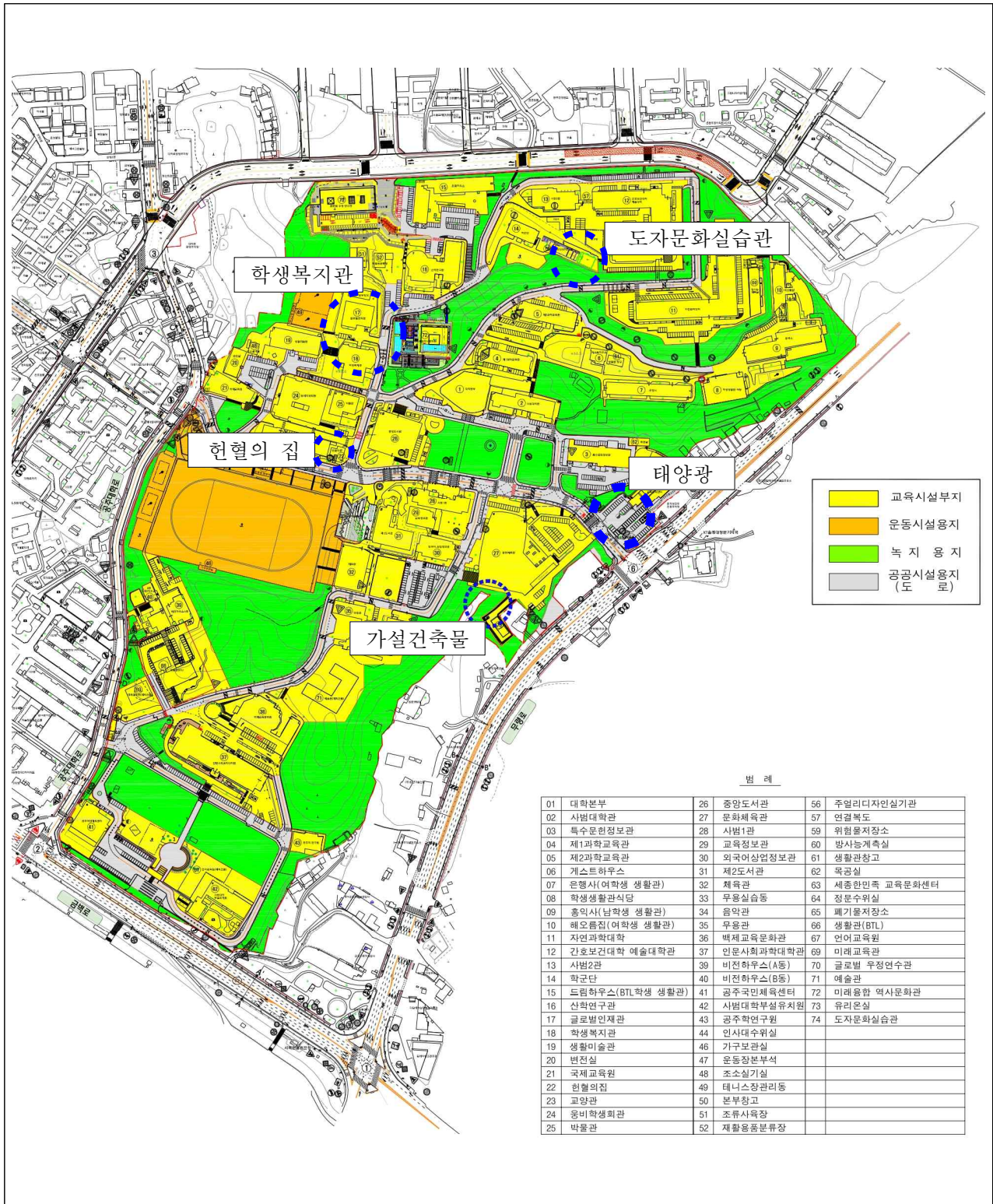
- 실시계획 인가일 ~ 2028년 01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일련<br>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br>명세서 |
|----------|---------|--------|----|---------|---------|------------|----|--------------|
|          |         |        |    |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
| 합 계      |         |        |    | 366,818 | 359,542 |            |    |              |
| 1        | 공주시 신관동 | 43     | 도  | 6,376   | 162     | 공주시        |    |              |
| 2        | 공주시 신관동 | 51     | 답  | 2,147   | 2,147   | 국(교육부)     |    |              |
| 3        | 공주시 신관동 | 46-4   | 대  | 254     | 254     | 국(교육부)     |    |              |
| 4        | 공주시 신관동 | 46-5   | 대  | 92      | 92      | 국(교육부)     |    |              |
| 5        | 공주시 신관동 | 43-15  | 잡  | 8       | 8       | 국(교육부)     |    |              |
| 6        | 공주시 신관동 | 43-16  | 잡  | 256     | 256     | 국(교육부)     |    |              |
| 7        | 공주시 신관동 | 171-18 | 학  | 19      | 19      | 국(교육부)     |    |              |
| 8        | 공주시 신관동 | 177-10 | 도  | 25      | 25      | 공주시        |    |              |
| 9        | 공주시 신관동 | 182    | 학  | 354,253 | 353,229 | 국(교육부)     |    |              |
| 10       | 공주시 신관동 | 242-1  | 임  | 233     | 233     | 국(교육부)     |    |              |
| 11       | 공주시 신관동 | 545    | 구  | 736     | 736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12       | 공주시 신관동 | 545-9  | 학  | 134     | 134     | 국(교육부)     |    |              |
| 13       | 공주시 신관동 | 546-2  | 학  | 59      | 59      | 국(교육부)     |    |              |
| 14       | 공주시 신관동 | 166-4  | 도  | 71      | 33      | 국(교육부)     |    |              |
| 15       | 공주시 신관동 | 52-3   | 답  | 2,155   | 2,155   | 국(교육부)     |    |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참 고 : 세부시설조성계획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1길 373 외 10건

|    |             |           |           |          |      |
|----|-------------|-----------|-----------|----------|------|
| 부여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 별 지 참 조(4건) |           |           |          |      |
| 변경 | 종전주소        | 변경전 도로명주소 | 변경후 도로명주소 | 변경일      | 변경사유 |
|    | 별 지 참 조(0건) |           |           |          |      |
| 폐지 | 폐지 도로명주소    |           | 폐지일자      |          | 폐지사유 |
|    | 별 지 참 조(7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041-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10. 01.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공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금강행복정원센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336-1번지 일원에 「금강행복정원센터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4) 및 휴양공원과(☎041-840-85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8일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참조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도 : 붙임 2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3 참조

##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가. 문화시설

#### 1)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br>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종류 | 위치                    | 면적(㎡) |         |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3              | 금강<br>행복정원센터 | 문화<br>시설  | 우성면 죽당리<br>336-1번지 일원 | —     | 증)4,642 | 4,642 | —         |    |

#### 2)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 면<br>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3           | 금강행복<br>정원센터 | · 문화시설 신설<br>- 위치 : 우성면 죽당리<br>336-1번지 일원<br>- 면적 : 4,642㎡ | ·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원조성에 따른 지역<br>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정원문화 체험 등 다<br>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삶의<br>질 향상 및 금강정원 활성화 효과를 극대<br>화하기 위해 정원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신<br>설하고자 함 |

#### 3)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 보전관리지역 | 20.0% 이하 | 80.0% 이하 | 4층 이하 |

※ 금회 신설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별 건축물 입지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

[illegible]

[illegible]



|        |       |
|--------|-------|
| 선<br>람 | 기관위원장 |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  |  |  |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